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창립 10년, 성과와 과제*

전 광 석**

국문초록

이 글은 2011년 창립한 한국사회보장법학회가 10년을 맞으면서 그 동안의 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는 목적을 갖는다. 먼저, 10년 전 학회를 창립하는 시대 배경, 학문적 상황을 정리하였다. 사회문제의 인식과 그 규범구조, 그와 같은 문제와 규범의 가변성, 문제와 규범이 상호 작용하면서 새로운 문제를 구성한다는 점에 대한 학술담론이 필요했다. 이와 같은 이해에 기초하여 체계와 원리를 형성하면서 학문적 독자성을 정립하는 학회의 과제가 제시되었다. 다음, 10년간의 성과는 그동안 개최된 학술대회의 주제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창립 당시에 제시되었던 문제를 심화시키고, 새로운 환경에서 필요한 담론을 구성하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사회보장법, 사회적 위험, 노동의 위기, 고령사회

* 이 글은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21년 가을학술대회 “포용사회와 사회보장법의 전망”(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동 주최 / 2021년 11월 5일)에서 발표된 특별기조강연 논문입니다.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목 차

- I. 창립
- II. 10년의 성과
- III. 과제
- IV. 관찰과 경험; 맺는 말을 대신하여

I. 창립

1. 전사(前史)

2011년 10월 8일 한국사회보장법학회(이하 ‘학회’)가 창립되었다. 창립 준비위원회가 구성되고 여기에서 학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방안 등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학회를 창립하는 구상은 이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2009년 법학교육제도와 법조인 양성의 방법을 전환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이 출범하였고,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법전원’에서 사용할 교재를 개발하는 과제를 공모하였다. 이에 관한 정보를 당시 황신정 조교로부터 전해 들은 이흥재 교수(서울대)가 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하였고, 공동연구진을 구성하였다. 이흥재 교수는 정년을 앞두고 있었다. 필자(연세대)와 박지순 교수(고려대)가 참여하였다. 공동연구자는 아니었지만 김복기 연구관(헌법재판소, 이후 이흥재 교수의 후임으로 서울대 교수로 부임)이 연구와 집필작업을 함께 하였다. 연구의 결과가 2011년 출간되었다¹⁾. 공동연구가 거의 끝날 무렵 이흥재 교수가 ‘학회’ 창립의 필요성을 밝혔다. 필자가 창립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기대 이상으로 많은, 사회보장법 전공자뿐만 아니라 노동법, 행정

1) 이흥재·전광석·박지순, 『사회보장법』, 신조사, 2011. 2017년 제4개정판부터는 이흥재 교수가 물러나고 김복기 교수가 공동집필자가 되었다. 필자는 제4개정판 머리말에 이흥재 교수의 선도적 역할을 최소한의 내용으로 언급한 바 있다.

법, 헌법 전공자들이 뜻을 같이 하였다. ‘학회’ 창립의 시기가 성숙했다는 의미였다. 이흥재 교수는 창립준비를 위한 인적 및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만큼 창립준비작업은 수월했고, 학회의 소프트웨어를 정비하는데 집중할 수 있었다²⁾.

위와 같은 학회 창립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보면 이흥재 교수가 당연히 학회를 이끌어야 했지만 사정에 의하여 그렇지 못했고, 필자가 초대 회장을 맡게 되었다. 필자는 지난 10년을 회고하면서 이 점을 기록에 남길 의무감이 있었다.

2. 창립과 과제

(1) 시대 배경

학회를 창립하는 날 필자는 창립 취지를 작성하여 발표하였고, 이는 현장에서 ‘학회’창립발기문으로 채택되었다³⁾. ‘학회’를 창립하는 시대적 배경은 다음과 같았다. 1961년 ‘사회보장법에 관한 법률’, 산재보험법, 의료보험법 등 ‘사회보장3법’이 제정되었지만 국가과제 및 개인생활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오랜 휴지기(休止期)를 거친 후 197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중반에 기본적인 사회보험법(의료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그리고 2007년 고령사회의 새로운, 그리고 전형적인 상황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시행되었다. 1999년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여 최저생활을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다. 1987년 이후 민주화에 뒤따랐던 복지의 시간이 오래 가지는 않았다.

복지의 사고(思考)는 이중적으로 새로운 상황 및 사고와 경합하여야 했다. 첫째, 1997년 우리의 특유한 외환위기, 2007-8년 전세계에 변화를 가져온 재정위기는 노동, 그리고 노동과 자본의 관계에 구조적 영향을 주면

2) 이에 대한 경과보고는 사회보장법학 제1권 제1호, 2012, 6면 이하에 수록되었다.

3) 창립발기문은 사회보장법학 제1권 제1호, 2012, 9면 이하에 수록되었다.

서 복지의 시간은 시장의 시간과 겹쳐졌다. 이때 이미 시장 자체가 사회 안전망을 구성하고, 또 복지가 시장의 기능에 기여하는 구상이 암축되어 있었다. 복지를 여러 층위에서 다양한 제도를 통하여 실현하는 구조를 형성하는 진행 방향이었다. 둘째, 고령사회 및 인구구조의 불균형, 이에 따르는 세대 간 형평과 정의의 문제가 아직 미숙한 상태에 있었던 복지의 구상에 복잡하게 작용했다. 그리고 상황의 근본적 변화에 따르는 구상과 제도의 전환에 대한 담론이 이후 시기에 더해졌다. 이와 같은 담론의 형성과 변화에 있어서 법학의 고유한 기능이 기대되었으며, ‘학회’는 이러한 시대의 과제를 갖고 출범하였다. 고용사회에 대한 의문과 전국민 소득 보장의 구상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창립발기문에서 다음과 같이 예견되었다. “... 이러한 과정에서 고용관계는 전통적인 정형을 일탈하였으며, 이러한 일탈이 심화될수록 사회보장 또한 기존의 정형에 집착할 수 없게 되었다”⁴⁾.

(2) 문제인식과 규범구조, 문제와 규범의 가변성과 상호 관련성

1970년대 후반 이후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복지의식과 제도가 보편화하면서 개인의 생활이 사회보장법에 편입되고, 사회보장법이 개인생활을 설계·형성하는 기반이 되는 시대가 열렸다. 이는 직접적으로는 입법 및 법원의 과제였지만 학문은 새로운 시대를 인식·분석하고, 또 형성하며, 입법 및 사법을 건설적으로 비판하며 견인하는 중요한 매체가 되어야 했다. 그런데 기존의 개별 학문분야에서 연구는 정책목적 중심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이 경우 연구가 최종적으로는 규범화로 이어져 안정적 제도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이 지점에서 법적 논의가 지체되어 왔고 복지담론에서 소외되었다. 학회는 이와 같은 연구 및 담론의 공백을 메워야 했다. 이는 전체적으로 학술 담론의 균형을 회복하는 문제였지만 사회보장법학은 우선 자신의 위상과 과제를 인식하여 정체성을 확보하여야 했다. 창립발기문에서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표현되었다⁵⁾.

4) 사회보장법학 제1권 제1호, 2012, 14면 참조.

“정책결정과 규범의 정합성, 정책의 규범구조에의 편입과 (상위 규범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사회보장법 내부에서) 규범 기준에 따른 검증과 조정, 규범화의 가능성과 한계, 그 한계에 대한 인식의 보충, 그리고 타당한 규범형식의 선택은 법적 담론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다”.

쉬운 과제는 아니었다. 사회보장법학은 “사회와 학문, 사회과학과 법학, 그리고 법학과 사회보장법학이 상호 작용하는 구도 속에서 과제를 인식·이해하고 또 평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사회과학의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 그리고 분석과 처방을 충실히 이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를 규범구조에 편입하여 기준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법학이 정책 그 자체와 정책의 타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을 따라가기에 벅찼고, 그만큼 법체계의 형성 및 규범적 인식은 뒤처졌다. 즉 지식의 격차가 있었다. 이 점에 대한 창립발기문의 서술은 ‘학회’의 창립, 그리고 운영에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요약하여 정리해본다⁶⁾.

“... 사회보장법의 교육은 소홀히 되었다. 이는 ...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의 쟁점으로 부각된 혹은 부각되어야 하였을 문제들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발달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 결과 문제 제기를 위한 인식 자체가 생성될 수 없었다. ... 대학에서 이에 관한 연구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였고, 학문후속세대가 양성되지 못하였다. 사회보장에 관한 연구는 경제학, 정치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보건학 등 사회과학이,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정부출연기관들이 선도하였다. 이들 학문분과 및 연구기관과 법학 및 법학대학에서의 사회보장에 대한 지식의 격차는 점점 더 커져갔다. 법학에서, 그리고 대학에서 사회보장법이 교육 및 연구의 대상으로서 진지하게 자리 잡지 못했지만 일부 노동법학자 등을 중심으로 사회보장법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또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협력과 분담을 통하여 연구역량 및 지식을 구축하지는 못했다. ... 사회보장법이 독자적인 위상을 갖고 그 위상에 맞는 위치를 점하지는 못했다. 정책 및 이론적

5) 사회보장법학 제1권 제1호, 2012, 16면 이하 참조.

6) 사회보장법학 제1권 제1호, 2012, 17면 이하 참조.

논의에서 법학의 독자적인 방법론과 주제가 투입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법기술적인 자문의 역할을 하는데 머물렀다. 그 결과 개별적 연구와 협동적 연구의 불균형은 여전했다”.

문제를 인식하고 그 규범구조를 형성하는 과제에는 사회문제와 이에 대한 규범적 응답이 가변적이고, 또 여기에 더하여 사회보장법의 제정과 개정이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정책효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 그리고 그 결과 정책과 규범이 상호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사회문제에 대한 규범적 응답이 새로운 문제의 기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복지를 위한 사회보험이 복지에의 포섭과 배제의 새로운 불평등을 가져오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과 시행이 노인복지법의 요양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키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자활급여의 구상이 노동빈곤의 제도화를 지체시켰던 경험이 좋은 예이다. 기본소득은 기존 사회보장법의 경로와 체계에 편입하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 정책적 타당성과 필요성이 논의의 중심에 있다. 이와 같은 역사로부터의 소외가 아직 문제로 제기되지 않았고, 또 어떠한 문제를 가져올지는 의문이다⁷⁾. 그만큼 사회보장법의 연구는 복지 지층과 지형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창립발기문에서 이러한 과제에 대한 서술을 옮겨본다⁸⁾.

“사회문제의 발견과 인식 및 진단, 그리고 처방 및 평가의 과정은 전체사회를 구성하는 다원적 체계의 협력과 조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사회보장이 경제적 불균형, 혹은 경제성장이 낳은 자본과 노동의 불균형을 교정하는, 소극적으로는 경제체계를 보충하는 목적과 의미를 갖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오히려 사회보장 그 자체의 경제적 효율성은 사회적 형평성과 규범적 안정성, 그리고 정의 등과 같은 독자적인 가치와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실현되어야 한다. 독자적인 체계로서 사회보장은 전체 체계와 관련성을 가지면서 진화한다”.

7) 이 점에 대해서는 아래 III.2. 참조.

8) 사회보장법학 제1권 제1호, 2012, 23면 참조.

(3) 체계와 원리

이미 암시되었듯이 사회보장법이 독자적인 위상과 기능을 확보하는 요청은 궁극적으로는 복지담론을 사회보장법의 체계와 체계에 특유한 원리를 기준으로 선도하기 위한 선결문제였다. 이는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졌다. 첫째, 사회보장법학 자체가 체계적 기준에 따라 연구의 소재를 정렬하고, 체계에 편입된 개별입법의 체계정합성을 기준으로 자기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다. 예컨대 이와 같은 선행작업의 기초 위에서 비로소 개혁입법에 있어서 대안으로 제시되는 이른바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판단할 수 있다. 산재보험과 일반 사회보험,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정책논의에 따랐던 비교의 관점은 모두 이와 같은 체계론적 기반 위에서 비로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둘째, 1988년 설립된 헌법재판소는 적지 않게 사회보장법 규정에 관한 심사를 하였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사회적 기본권, 직업의 자유·재산권과 같은 자유권적 기본권과 함께 평등권이 중요한 심사의 기준이었다. 그런데 평등권 심사에서 비교대상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체계의 동질성과 이질성에 대한 판단이 먼저 필요했고, 이는 다른 아닌 사회보장법체계의 문제였다. 셋째, 사회보장법의 체계와 원리는 이에 관한 학문적 합의가 있는 경우 현실적 필요성 혹은 정치적 자의에 따라 산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사회과학의 논의, 그리고 입법과정에 안정적인 담론의 틀을 제시하고, 그 결과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게 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기술을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창립발기문에서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⁹⁾.

“ ... 거의 전체 국민이 사회보험의 가입자로 선택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연대는 이제 의미를 상실하였는가? ... 재정긴축의 시대에, 사회보장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그리고 후세대의 평등한 사회보장을 위하여 사회적 위험을 축소 이해하고, 급여를 삭감하며, 급여의 조건을 엄

9) 사회보장법학 제1권 제1호, 2012, 27면 이하 참조.

격히 하는 변화는 어느 지점까지는 사회보험의 체계 내의 문제이며, 어느 지점을 벗어나면 더 이상 체계와 조화될 수 없는, 즉 체계일탈의 개편인가?, ... 고용이 사회보장의 기초이며, 사회보장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라는 이해에서 점점 오늘날 고용은 사회보장의 수단으로 이해되고 있다(고용을 통한 사회보장).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관계에서 얻는 소득(시장소득)과 사회보장에 의한 소득(사회소득)은 병립하는가, 아니면 대체 혹은 조정의 대상인가?”.

II. 10년의 성과

1. 정기학술대회

(1) 사회보장기본법과 헌법

2011년 학회가 창립되고 2012년 이후 매년 2차례에 걸쳐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집행부가 기획한 주제, 그리고 자유주제가 발표되었다. 2012년 제1회 학술대회의 주제는 ‘전환기의 복지국가와 사회보장법의 과제’였다. 사회보장입법을 선도하는 기능이 기대되었던 사회보장기본법과 개별 사회보장법의 정합성을 분석·검토하는 주제로 구성되었다; 사회정책과 사회보장법(전광석), 사회보장법 총론의 가능성(이호근), 사회보험법과 사회보장기본법(박귀천), 공공부조법과 사회보장기본법(김남근), 사회복지(관련)법과 사회보장기본법(하명호)¹⁰⁾. 사회보장법의 일반 규정을 기준으로 개별 사회보장법을 비판적으로 점검하고, 개별사회보장법의 특수성에 비추어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능과 한계를 정리하며, 이를 기반으로 관련 입법의 담론을 구성하여야 했다.

제4회 학술대회(2013)와 제13회 학술대회(2018)는 헌법과 사회보장법의 관계를 다루었다. 제13회 학술대회는 상위 규범으로서 헌법적 기준을

¹⁰⁾ 사회보장법학 제1권 제1호, 2012, 31면 이하, 51면 이하, 121면 이하, 197면 이하 등 참조

사회보장법의 형성에 반영하는 주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었다; 사회보장법과 헌법의 규범력(전광석), 헌법상 사회보장권 보장 시론(試論)(김복기), 헌법개정안에 담긴 사회권의 의미와 한계(김남희). 제4회 학술대회의 주제는 사회보장법의 규범형식이었다; 사회보장법과 법률유보원칙(이준일), 사회보장입법과 포괄위임의 범위와 한계(김진곤), 사회보장법과 조례의 역할과 한계(조성규)¹¹⁾. 사회보장법에서 규범 형식 그 자체가 독립된 주제이며, 그동안 사회보장법의 중요한 내용이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의 형식으로 규율되고, 그만큼 공론화가 제한되었던 입법 관행 및 문화를 주목하는 효과가 기대되었다. 이는 사회보장법이 민주주의 및 법치국가원리를 구성하고, 헌법질서에 편입하여 헌법담론의 중요한 부분을 보충하는 의미가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실체법적 기준에 비해서 위임입법의 한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적극적인 심사를 하여 왔고, 이를 비판적으로 점검하는 자리가 되었다.

(2) 사회적 위험의 정렬, 노동의 위기와 고령사회

‘학회’는 전형적인 사회적 위험을 사회보장법의 전체질서에서 구조화하는 작업을 해 왔다. 이후 개별 사회적 위험 자체에 대한 담론을 구성하는 작업이 예정되어 있었다. 제2회 학술대회(2012)는 빈곤문제와 그 다원적 규범구조를 제시했다; 빈곤과 국민연금법(노상헌), 빈곤과 기초노령연금법(김지혜), 빈곤과 건강보험법(박지용)¹²⁾. 제6회 학술대회(2014)는 소득보장 그 자체는 아니지만 다층적 보장구조에서 제도 간의 기능 분담 및 대체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또 공공부조에서 보충적 소득보장의 기준을 점검하여 소득보장의 진행방향을 모색하였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관계,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중심으로 (김린), 기초연금은 우리 사회의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 기초연금법 제정의 의미와 한계(김남희), 현대사회의 빈곤층의 규범기준은

11) 사회보장법학 제3권 제1호, 2014, 35면 이하, 70면 이하 등 참조

12) 사회보장법학 제2권 제1호, 2013, 5면 이하, 43면 이하, 71면 이하 등 참조

무엇인가? - 기초생활보장수급권의 요건에 관한 법개정안(김종수)¹³⁾. 제 11회 학술대회(2017)에서는 장애인 지원의 이념을 정리하고, 장애인이 적극적으로 정치과정에 참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선거권, 장애인의 권리를 재판절차에서 실현하는 방안이 발표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장애인의 평등권 실현(이재희), 장애인 참정권 보장;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 문제를 중심으로(윤수정), 법원에서의 장애인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공익소송(홍석표)¹⁴⁾.

‘학회’는 고령사회가 깊어지고 노동시장이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사회보장법의 과제를 인식하고 기능을 보완하거나 혹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여야 했다. 제8회 학술대회(2015)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르는 사회안전망의 재구성을 주제로 하였다.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문제가 시급했다; 한국의 노동시장구조와 사회안전망 정책과제(황덕순), 산재보험법의 적용확대를 위한 정책과제(박지순)¹⁵⁾. 제17회 학술대회(2010)에서 이 문제는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루어졌다; 산재보험의 피보험자성에 관한 소고 - 독일제도를 중심으로(김영미), 프랑스 산재보험제도와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이은주)¹⁶⁾. 제10회 학술대회(2017)는 한국노동연구원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국제학술대회로 개최하였다. 노동시장의 위기가 고용과 소득, 그리고 복지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며, 이로써 넓게 보면 사회 및 국민통합의 과제를 재구성하여야 한다는 ‘학회’의 인식에 따른 것이었다. 대주제는 ‘사회적 양극화와 사회보장법의 과제’였으며, 한국, 일본, 독일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일본의 사회적 양극화와 사회보장법(기쿠치 요시미), 독일의 사회적 양극화와 사회보장법(에버하르트 아이헨호퍼), 사회통합과 사회보장법(전광석)¹⁷⁾. 제13회 학술대회(2018)는 같은 맥락에서 실업보장을 확대하는 방안이 주제였다; 근로빈

13) 사회보장법학 제3권 제2호, 2014, 51면 이하, 78면 이하, 117면 이하 등 참조

14) 사회보장법학 제6권 제1호, 2017, 91면 이하, 145면 이하 등 참조

15) 사회보장법학 제4권 제2호, 2015, 132면 이하, 168면 이하 등 참조

16) 사회보장법학 제9권 제1호, 2017, 55면 이하, 87면 이하 등 참조

17) 사회보장법학 제5권 제2호, 2016, 67면 이하, 5면 이하, 113면 이하 등 참조

곤의 특성과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방향(이병희), 실업부조 법제화의 의의와 쟁점(김근주), 프랑스 자영업자 보호 확대를 위한 실업보험 개정 내용(양승엽), 이탈리아 자영업자 고용보험(신수정)¹⁸⁾.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노동시장이 이중 구조로 분열되고 특수형태노동, 비정규노동, 단시간 및 초단시간 노동이 널리 퍼지면서 노동이 생활의 기초가 될 수 없었으며, 노동의 계속적 단절로 인하여 소득의 안정성이 상실되는 상황에서 전국민고용보험, 혹은 실업부조를 도입하는 필요성이 주체였다. 이는 앞으로 사회보장법과 노동법, 사회보장법 내부에서 사회보험으로서 고용보험과 공공부조로서 실업부조, 또 공공부조 내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실업부조의 기능 부담을 재정렬하는 과제를 '학회'에 부과하였다.

제18회 학술대회(2020)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사회보장법제'를 주제로 하였으며 고용보험 적용확대 문제가 다시 다루어졌다; 고용보험 적용확대의 법적 쟁점(김근주), 일본의 육아휴직급여 개편에 관한 소고 - 2020년 고용보험법 개정 중 목적 변경과 재원 분리를 소재로(홍성민)¹⁹⁾. 2020년 이후 팬데믹의 시기가 사회보장법의 구상에 전환적 계기가 될 것인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이런 가운데 '학회'는 제19회 학술대회(2021)에서 이에 관한 담론의 구조를 본격적으로 제시하였다; '포스트팬데믹의 사회보장법제(이호근), 긴급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을 둘러싼 법적 쟁점(노호창/김영진)²⁰⁾. 이는 앞으로 학회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제9회 학술대회(2016)에서 가족의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법의 과제를 다루었다. 사회보장법이 전제하고 있는 가족, 그리고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다. 이에 비해서 발표문은 개별 제도를 중심으로 다루는 한계가 있었다; 기초생활보장과 부양의무(박영아), 이혼과 연금수급권(김린), 가족과 장기요양 인정(홍성민)²¹⁾. 고령사회의 진행에 따르는 '학회'의 중요한 과제를 남긴 셈이다.

18) 사회보장법학 제7권 제2호, 2018, 9면 이하 참조

19) 사회보장법학 제9권 제2호, 2020, 1면 이하 참조

20) 사회보장법학 제10권 제1호, 2021, 1면 이하, 81면 이하 등 참조

21) 사회보장법학 제5권 제1호, 2016, 103면 이하, 39면 이하 등 참조

‘학회’ 창립 이후 10년간 학술대회는 사회보장법의 전체질서를 정렬하는데 우선 순위를 두었다. 개별 사회적 위험 자체에 대한 담론은 미루어졌다.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학회’의 운영기준이었다. 제5회 학술대회(2014)에서는 건강보장 자체가 주제였다; 의료보장의 인프라; 영리병원과 당연지정제도의 법적 논점(김인재), 노인의 의료보장; 의료평등의 관점에서 현행 노인 의료보장의 문제점과 과제(손영수), 적정진료의 범위; 비급여와 적정진료의 규범적 기준(최호영).

제12회 학술대회(2017)는 분단의 극복과 통일과 관련하여 북한 사회보장을 파악하고 우리의 사회보장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법을 구상하는 방안을 탐색했다. 정치 및 사회·경제체제를 달리하는 남북한 공동체에서 사회보장의 실체에 대한 파악은 통합의 기준과 방법, 그리고 진행 순서 및 속도를 결정하는 선결문제였다. 또 일반적인 전환기 정의의 문제를 법학, 그리고 사회보장법학에서 특유하게 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학술대회에서 이 점이 우선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않으며, 개별 제도의 문제가 검토되었다. 이 역시 앞으로 ‘학회’의 과제로 남겨졌다; 통일을 대비한 사회보장법 선행 연구와 시대별 경향(양승엽), 남북한 통일과 최저생활보장(김복기), 독일의 건강보험체계와 통일 이후의 제도 변화(김영미), 사회보장법으로서 북한이탈주민지원법의 일고찰(홍성민)²²⁾.

(3) 재정·조직, 수급권의 형성과 보호

‘학회’는 사회보장재정, 그리고 조직을 중심으로 사회보장법을 정렬하여 정책과 규범의 정합성을 논의하는 장(forum)을 제공하였다. 이는 특히 사회보험에서 사회보장에 관한 국가의 일반적인 과제와 이에 따르는 재정 및 의사결정방식, 그리고 개별 사회보험의 특수한 목적과 재정방식 및 의사결정방식이 대립하고, 또 혼재하는 지점에서 그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문제였다. 제7회 학술대회(2015)는 사회보장의 재정구조, 그리고

22) 사회보장법학 제6권 제2호, 2017, 11면 이하, 43면 이하, 67면 이하, 103면 이하 등 참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담 배분, 고령사회에서 노인의료비의 특수성에 따른 재정방식의 진행방향 등으로 구성되었다; 사회보장재정의 규범적 논의구조(전광석), 사회복지재정의 부담주체(문병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신영석)²³. 제16회 학술대회(2019)는 사회보장조직의 문제를 ‘거버넌스’의 주제로 다루었다; 사회보장 거버넌스 주체로서의 사회적 경제조직(홍성민), 한국의 건강보장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규범적 고찰(권오탁). 학술대회가 국가의 일반과제와 사회보험의 특수한 과제를 전체적으로 비교하고 개별 영역의 특수성을 추출하여 입법과제를 제시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으며, 이에 관한 앞으로의 과제를 남겼다. 예컨대 국민연금에서 가입자와 국민 전체의 노후소득보장,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이익의 충돌이 주로 재정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기존 담론의 공백을 메우는 작업이 필요했다.

사회보장법은 여러 층위에서 다양한 제도를 통하여 입법목적을 실현하며, 최종적으로는 소송 등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권리가 구제되어야 한다. 전자는 일반적인 입법정책의 문제이며, 후자는 사후적인 권리구제의 과제이다. ‘학회’는 일찍이, 즉 제3회 학술대회(2013)에서 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과 조정의 문제를 펼쳤다. 이는 제도 간에 기능을 분담하여 수급권을 조정하는 가능성과 한계를 사회보장법의 체계와 이론, 그리고 헌법적 기준에 따라 밝히는 도전적 과제였다; 수급권 제한 사유의 적절성과 해석상의 문제(차진아), 급여처분의 변경, 취소 및 부당이득의 반환(이은선), 중복급여 조정에 관한 법적 쟁점(도재형)²⁴. 제15회 학술대회(2019)에서 후자의 문제를 다루었다. 사회보장소송의 특수성을 전담법원을 설치하여 반영하는 문제에 관한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경험을 듣는 자리가 되었다; 독일의 사회법 분쟁해결과 사회법원의 역할(차성안), 오스트리아의 사회보장 관련 소송절차(Christina Hiessl), 사회보장소송의 특수성과 사회보장법원의 필요성(장승혁)²⁵.

23) 사회보장법학 제4권 제1호, 2014, 5면 이하, 55면 이하 등 참조

24) 사회보장법학 제2권 제2호, 2017, 51면 이하, 147면 이하, 108면 이하 등 참조

2. 학술지 ‘사회보장법학’, 청년사회보장법연구모임(청사모)

‘학회’는 반연간으로 ‘사회보장법학’을 출간하여, 현재 제10권 제1호에 이르고 있다. ‘사회보장법학’에는 학술대회 발표문 외에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관심과 관점에 따른 논문이 실려, 사회보장법 연구의 유용한 준거가 되고 있다. 짧은 역사에 비해서 괄목할만한 기여이다. 이 자리에서 이를 정리·분석할 수는 없으며, 앞으로 사회보장법학의 역사에 관한 연구에 미룬다. 한때 청년사회보장법연구모임(청사모)이 조직되어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모임이 운영된 바 있다. 이러한 모임이 계속성을 갖지는 못했지만 정기학술대회 이외에 회원 간의 의사소통을 활발히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Ⅲ. 과제

‘학회’의 역사를 10년의 시간 단위로 구획하고 되돌아보며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는 것은 무리이다. 지난 10년 동안 일부 학문적 과제가 완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학회를 창립하는 취지를 기준으로 지난 10년의 -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은 - 성과를 보충하는 사고가 또 다른 시간의 기본적인 출발점이 된다. 이 점에서 사회문제와 사회보장법의 역사와 함께 ‘학회’의 역사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이 필요하다. 현재 진행되는 변화, 그리고 우리가 겪는 팬데믹이 전환적인 혹은 단절적인 또 다른 시간 혹은 포스트 팬데믹으로 구획될 수 있는지, 이전 시간, 그리고 팬데믹 시대 이전 문제와 상황이 기본적인 구조를 유지하면서 계속적·점진적인 변화과정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고가 필요할 것이다.

1. 출발지점을 되돌아보며

사회보장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질서와 함께 거시질서를 구성하며, 사회보장법이 헌법 및 국제법 등 (규범적인 혹은 사실상의) 상위 규범, 그리고 행정법, 노동법, 가족법 등 인접 법영역과 밀접하게 기능하여야 한다는 인식은 뚜렷했다. 다만 ‘학회’를 창립하는 시점에 사회보장법학이 독자성과 정체성이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인식은 개별 사회적 위험을 주제로 선택한 경우에도 전체질서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반영되었다. 이제 사회보장의 정체성 자체를 주제로 하는 학술대회를 통하여 지난 10년의 성과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²⁶⁾. 이로써 사회보장법의 원리와 원칙을 중심으로 사회적 위험, 사회보장 재정 및 조직을 재정렬하여 구조적 시각을 넓힐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고용관계를 매개로 하는 사회보험과 전국민사회보험, 사회보험 재원으로서는 보험료와 조세의 보충과 대체, 일반 민주주의와 기능적 민주주의가 결합하는 거버넌스 등의 주제가 규범적 지형을 제시하고 정책적 선택의 안정적 범주를 구성하여야 한다.

사전적으로 입법을 형성하고, 사후적으로 이를 통제하는 헌법의 기능에 대한 접근이 사회보장법의 소재(素材)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구체화되어야 한다. 특히 재산권은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가 다층화·다원화되면서 특정 제도에서 형성된 수급권을 자체 조정하거나, 또 다른 제도에서 형성된 수급권과 조정하는 필요성, 그 한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제13회 학술대회가 남긴 과제이다²⁷⁾. 평등권은 사회보장의 목적이 여러 층위에서, 또 다양한 제도에 의하여 실현되면서 수급권의 내용과 수준을 법적 평등,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 등의 이념에 따라 정렬하여 타당

26) 이에 관한 회원의 개별적인 연구성과는 드물지 않다. 예컨대 장승혁, “사회보험 법과 사회연대의 원칙”, 사회보장법학 제6권 제1호, 2017, 5면 이하; 장우찬, “사회연대 원리에서 연대의 본질에 대한 법적 소고”, 사회보장법학 제10권 제1호, 2021, 179면 이하 등 참조.

27) 위 각주 11 참조.

성을 점검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제11회 학술대회의 주제 의식을 사회보장법 전체에 확대하고 또 쟁점을 정리하는 선행작업이 필요하다²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사회보장의 권리) 역시 평등권과 연계하여 목적론적 급여와 원인관계를 전제로 형성되는 급여를 차별적으로 접근하고 헌법적 정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사회보장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인 최저생활보장의 권리를 전체 사회질서에서 정렬하여 빈곤의 원인에 가장 근접한 법률관계에서 최저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회 학술대회의 주제를 확대·심화하는 관점이다²⁹⁾. 노인빈곤, 노동빈곤 등이 대표적으로 보충되어야 하는 소재이며, 이에 대해서는 또 다른 관점에서 아래에서 언급한다.

개별 사회적 위험을 전체 사회보장질서에 정렬하여 이해하는 기본구상은 계속 보충되어야 한다. 사회보장법은 사회적 위험의 가변성과 규범의 기능적 한계로 인하여 어느 정도 임시적이고, 진화하는 과정에 있다. 한편으로는 ‘학회’의 창립 이후 시간의 제약과 역량의 한계로 인하여 주목하지 못했던 의제를 되돌아 보아야 한다. 가족의 구조변화에 따른 사회보장법의 과제가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한편 사회적 위험과 상황에 관한 특유한 규범을 기존의 사회보장법의 구도에 편입하여 기능과 기능의 중첩 및 조정의 문제를 밝히는 작업이 계속되어야 한다. 기존의 학술대회에서 개별 사회적 위험에 특유한 제도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제도를 함께 살피는 제도적 고찰(예컨대 제2회 학술대회; 빈곤, 제6회 학술대회; 노후소득보장, 제11회 학술대회; 장애인 복지와 평등)은 이를 기능적으로 점검하는 단계로 발전하여야 한다. 2007년 제정·시행되었고 2014년 개정된 기초연금법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 법이 국민연금에서 낮아진 연금수준을 보충하여 노인의 소득을 보장하는 목적을 갖는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수급요건에 관한 노인의 특유한 상황에 적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노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능을 갖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사회적 위험을 보

28) 위 각주 14 참조.

29) 위 각주 13, 18 참조.

호하기 위한 특유한 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제도의 기능이 새로이 주목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면서 적용대상과 급여의 종류 및 내용, 수준에 관한 사각지대를 노인복지법이 부담하여야 하는 구도가 대표적인 예이다.

2. 다가오는 시대

1997년 우리의 외환위기와 2007-08년 세계적인 재정위기를 계기로 비전형적인 고용유형이 일반화되면서 고용을 매개로 복지를 실현하는 구상은 한계에 부딪친 듯 하다. 고용 및 소득이 불안정해지면서 고용-소득-복지의 선순환이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2019년 이후 전개되는 팬데믹 상황은 문제의 정도를 심화시켰다. 이에 사회보장법은 이중적 관심을 가져야 했다.

첫째, 노동의 복지기능을 강화하여야 했다. 지난 몇 년간 진행된 최저임금에 관한 논의가 대표적인 예이다. 또 헌법에 규정된 노동조건 법정주의(제32조 제3항), 노동 3권(제33조)이 사회보장의 기능을 중심으로 재정렬되어야 한다. 노동시장이 구조적으로 분열하면서 노동은 정규직을 중심으로 연대하고, 점점 비중을 높여가는 플랫폼노동에서 사용자와 노동자의 정체성이 모두 뚜렷하지 않게 되면서 노동 3권이 헌법이 의도한 기능을 수행할지 예단하기 어렵다. 이 점이 헌법의 궤도를 벗어나는 경우, 그 결과 노동의 권리와 노동 3권이 상호 기능하는 관계가 작동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조건 법정주의가 사회보장의 과제를 실현하는 비중을 높여야 한다. 물론 이때 시장의 부담능력과 한계에 대한 논의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새로운 노동 상황에 맞추어 사회보장법 자체가 사고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전형적인, 정형화된 고용유형의 기반 위에서 형성된 기존의 사회보험법이 해석에 의하여 전국민에게 적용되어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기존의 규범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적용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거나 새로운 범주의 고용유형을 독자적으로 포섭

하는 전환을 할 수 있다. 전자는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이지만 해석에 한계가 있다. 후자는 예컨대 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법에서 시도되었으나 그 실효성이 제한적이었다. 또 새로운 범주의 고용유형을 독자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다. 제19회 학술대회에서 이호근 교수는 이와 같은 정책방향을 ‘고용중심 사회안전망에서 소득중심 사회안전망’으로의 전환으로 표현하고, 각국의 제도변화를 비교하며 합의를 찾으려는 작업을 한 바 있다³⁰⁾. 이 경우 고용근로자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용자의 재정부담이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국민에게 확대되는 내용으로) 변형되어야 하며 이에 관한 이론적 근거가 재구성되어야 한다³¹⁾.

기존의 경로를 완전히 벗어나서 보편적으로 기본소득(Basic Income)을 보장하는 방안은 아직 실체적 내용, 정치적 및 재정적 실현 가능성 및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논의단계에 있다. 고용과 소득, 그리고 복지의 선순환이 회복될 수 없다는 가정에 기초하면 기본소득은 그 논의의 가치가 있다. ‘학회’가 아직 이를 학술대회의 주제로 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사회보장법학’에 이에 관한 여러 논문이 실려 회원의 관심을 짐작할 수 있었다³²⁾. 기본소득의 정책적 필요성과 타당성 외에 연구의 공백도 뚜렷하게 보인다.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보장법의 이념, 체계와 원리, 그리고 실현구조에 관한 기존의 경로에서 벗어나는 점이 갖는 규범적 의미, 기존의 경로에서 형성된 권리의 전환적 처리의 문제, 이에 관한 헌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기본소득의 연구에 있어서 이는

30) 위 각주 20 참조.

31) 이에 관한 유용한 입법례로 독일의 예술출판인 사회보험(Künstlersozialversicherung)에서 가입자와 공생관계에 제3자에게 보험료 일부를 납부하도록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이 있다. 이에 대한 헌법적 판단으로는 BVerGE 75, 159면 이하 참조.

32) 김도훈,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 계획과 중간평가”, 사회보장법학 제8권 제2호, 2019, 97면 이하; 노호창, “기본소득의 법적 고찰”, 사회보장법학 제9권 제1호, 2020, 143면 이하; 서정희/노호창, “기본소득법률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회보장법학 제9권 제2호, 2020, 31면 이하; 노호창/김영진, “긴급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을 둘러싼 법적 쟁점”, 사회보장법학 제10권 제1호, 2021, 81면 이하 등 참조.

(사회과학이 대체할 수 없는) ‘학회’의 고유한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학회’를 창립하였던 2011년 시점에서 이미 외국인의 유입 규모는 적지 않았으며 외국인의 사회보장은 ‘외국인을 포함하는 우리 사회’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사회적 의제였다. 또 우리 국민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외국에서 보장하는 문제도 입법정책적 주목을 받았다. ‘학회’ 창립 10주년을 맞아 제20회 학술대회가 이 주제를 다룬다. 이 주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학회의 과제와 연계되어 있다. 첫째, ‘학회’가 처음부터 중점을 두었던 사회보장법의 전체 구도와 개별제도의 관점에서 외국인의 사회보장법적 지위를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만큼 부담이 되는 주제이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문제의 제기 자체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주제는 한편으로는 헌법의 규범력과 연계하고, 다른 한편 헌법의 내용을 보충할 수 있다.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헌법해석론(제6조 제2항),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평등의 점진적 실현에 관한 헌법이론 및 헌법정책론(개정론)을 재구성하는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사회보장법과 국제법이 서로 담론을 보충하고, 이로써 우리 사회가 전지구적 사회공동체에 편입되는 계기가 된다. 이를 위하여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국제법적 함의를 이해하고 이를 기초로 국내사회보장법 및 노동법의 정합성을 점검하며, 또 국내법이 국제법을 선도하는 가능성도 모색되어야 한다.

IV. 관찰과 경험; 맺는 말을 대신하여

사회문제에 대한 규범적 연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법의 일차적인 과제가 개별적인 사회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과 처방을 하는 데 있지는 않다. 오히려 이를 유형화하여 체계를 형성하고, 원리와 원칙을 구성하여 진단과 처방의 지향점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사회보장법학은 사회문제에 대한 ‘관찰’자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정한 질서를

구상하고 이러한 범주에서 ‘아름다운’ 시간이 진행된다는 가정을 하는 민법과 형법 등 일반 법률과 달리 사회보장법의 규범이 실제 의도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경험’해야 하는 부담도 따른다. 관찰자로서 현실 및 규범과 거리를 유지하고, 동시에 현실과 규범을 경험하여 관찰지식을 구성하는 모순적 위상과 이중적 부담에서 관찰과 경험이 균형을 이루는 또 다른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이홍재·전광석·박지순, 『사회보장법』, 신조사, 2011
- 김남희, “기초연금법 제정의 의미와 헌법적 문제점”, 사회보장법학 제3권 제2호, 2014
- 김도훈,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 계획과 중간평가”, 사회보장법학 제8권 제2호, 2019
- 김 린, “이혼으로 인한 공적 연금수급권 분할에 대한 소고”, 사회보장법학 제5권 제1호, 2016
- 김 린,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에 대한 규범적 관점에서의 소고”, 사회보장법학 제3권 제2호, 2014
- 김복기, “남북한 통일과 최저생활보장 시론”, 사회보장법학 제6권 제2호, 2017
- 김영미, “독일의 건강보험체제와 통일 이후의 제도 변화”, 사회보장법학 제6권 제2호, 2017
- 김영미, “산재보험의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성에 관한 소고 - 독일 재해보험을 중심으로-”, 사회보장법학 제9권 제1호, 2017
- 김지혜, “빈곤과 기초노령연금법”, 사회보장법학 제2권 제1호, 2013
- 김중수, “사회보장위원회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사회보장법학 제3권 제2호, 2014
- 김진곤, “사회보장법영역에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의 적용과 그 한계”, 사회보장법학 제3권 제1호, 2014
- 노상헌, “빈곤과 국민연금법”, 사회보장법학 제2권 제1호, 2013
- 노호창, “기본소득의 법적 고찰”, 사회보장법학 제9권 제1호, 2020
- 노호창·김영진, “긴급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을 둘러싼 법적 쟁점”, 사회보장법학 제10권 제1호, 2021
- 도재형, “사회보장급여의 조정”, 사회보장법학 제2권 제2호, 2017
- 박귀천, “사회보험법과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법학 제1권 제1호, 2012
- 박영아, “기초생활보장과 부양의무”, 사회보장법학 제5권 제1호, 2016
- 박지순·정정임, “산재보험의 적용확대에 관한 정책적 과제”, 사회보장법학 제4권 제2호, 2015

22 사회보장법학 제10권 제2호(2021. 12.)

- 박지용, “빈곤과 건강보험법”, 사회보장법학 제2권 제1호, 2013
- 서정희/노호창, “기본소득법률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회보장법학 제9권 제2호, 2020
- 양승엽, “통일을 대비한 사회보장법학 연구의 필요성과 방향”, 사회보장법학 제6권 제2호, 2017
- 양승엽, “프랑스의 고용보험 개정 내용”, 사회보장법학 제7권 제2호, 2018
- 이은선, “사회보장법상 급여처분의 변경 및 부당이익의 반환”, 사회보장법학 제2권 제2호, 2017
- 이은주, “프랑스 산재보험제도와 종속적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 사회보장법학 제9권 제1호, 2017
- 이재희, “장애인의 평등권 보장에 대한 헌법적 검토”, 사회보장법학 제6권 제1호, 2017
- 이준일, “사회보장 영역에서 법률유보원칙”, 사회보장법학 제3권 제1호, 2014
- 이호근, “사회보장법 총론의 가능성”, 사회보장법학 제1권 제1호, 2012
- 이호근, “포스트 팬데믹의 사회보장법제”, 사회보장법학 제10권 제1호, 2021
- 장승혁, “사회보장소송의 특수성과 사회보장법원의 필요성”, 사회보장법학 제8권 제1호, 2019
- 장승혁, “사회보험법과 사회연대의 원칙”, 사회보장법학 제6권 제1호, 2017
- 장우찬, “사회연대 원리에서 연대의 본질에 대한 법적 소고”, 사회보장법학 제10권 제1호, 2021
- 전광석, “사회정책과 사회보장법”, 사회보장법학 제1권 제1호, 2012
- 전광석, “사회보장제정의 규범적 논의구조”, 사회보장법학 제4권 제1호, 2015
- 전광석, “사회통합과 사회보장법”, 사회보장법학 제5권 제2호, 2016
-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학회의 창립과 과제”, 사회보장법학 제1권 제1호, 2012
- 차성안, “독일의 사회법 분쟁 해결과 사회법원의 역할”, 사회보장법학 제8권 제1호, 2019
- 차진아, “사회보장수급권의 헌법적 근거와 제한사유의 합헌성에 대한 검토”, 사회보장법학 제2권 제2호, 2017
- 하명호, “사회복지서비스법 총론 구성의 시론”, 사회보장법학 제1권 제1호, 2012
- 홍석표, “법원에서의 장애인 권리구제수단으로서의 공익소송”, 사회보장법학 제6권 제1호, 2017

- 홍성민, “사회보장법으로서 북한이탈주민지원법의 일고찰”, 사회보장법학 제6권 제2호, 2017
- 홍성민, “일본의 육아휴직급여 개편에 관한 소고 - 2020년 고용보험법 개정 중 목적 변경과 재원 분리를 소재로-”, 사회보장법학 제9권 제2호, 2020
- 황덕순,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와 사회안전망 정책과제”, 사회보장법학 제4권 제2호, 2015
- Christina Hiessl, “The Legal Enforcement of Social Security Rights in Austria”, 사회보장법학 제8권 제1호, 2019
- Eberhard Eichenhofer, “Social Polarization and Social Security Law”. 사회보장법학 제5권 제2호, 2016
- Yoshimi Kikuchi, “Social Polarization and Social Law in Japan”, 사회보장법학 제5권 제2호, 2016

<Abstract>

The Korean Social Security Law Association 10 Years, Achievement and further Mission

Cheon, Kwang seok*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achievement of the Korean Social Security Law Association in the last 10 years and suggest its future mission. First, the time background and academic discourse at that time was described. The recognition of the social problem and its normative structure, variability of the problem itself and related norm should be understood. It should be also paid attention, that new problem evolves with the interaction between problem and norm. The Association is assigned to build the academic identity based on the so formed system and principles. Then, the achievement of the Association was analyzed around the subjects dealt with in the conferences held twice a year. Lastly, it was proposed as the future mission of the Association to deepen the themes suggested at the starting point, and then to structure the new problems in the academic discourse in the age of the challenging circumstances.

Key Words: Korean Social Security Law Association, Social Security Law, Social Risks, Crisis of Labor, Aging Society

* Professor of Public Law, Yonsei Law School